

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9.7.9.(화) 16:00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문석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박문희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9년 6월 24일

나. 회부일자 : 2019년 7월 3일

3. 제안 이유

- 도내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은 물론 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제2조)

나.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3조)

5. 검토의견

-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은 물론 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